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1

국제 교역에서 식물보호와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위한 식물위생 원칙

Phytosanitary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and the Application of Phytosanitary
Measures in International Trade

(2006)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06. *Phytosanitary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and the application of phytosanitary measures in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1.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06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3 (한국어 번역)"

"© FAO, 1995–2006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89-09 TC-RPPOs가 식물검역 원칙 주제를 추가(1989-001)

1990-07 전문가작업단이 초안 작성

1991-05 TC-RPPOs가 초안을 검토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1991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1992-05 TC-RPPOs가 초안을 수정하고 GATT Uruguay Round와 조화를 요청

1993-05 TC-RPPOs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1993-11 27차 FAO 총회가 기준을 채택

ISPM 1. 1993. 국제 무역과 관련된 식물검역 원칙. 로마, IPPC, FAO

1998-05 CEPM은 IPPC 사무국이 작성한 수정된 초안을 소개

1998-11 ICPM-1은 ISPM 1 개정 주제를 승인

2001-05 ISC-3이 *ISPM 1 개정* 작업지시서 2를 승인

2002-04 ICPM-4은 높은 우선순위 주제를 인지

2003-05 SC-7은 작업지시서 2를 수정

2004-02 전문가작업단이 기준을 수정

2004-04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전문가작업단으로 돌려보냄

2004-10 전문가작업단을 기준을 수정

2005-04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2005-06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2005-11 SC가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06-04 CPM-1이 수정된 기준을 채택

ISPM 1. 2006. 국제 교역에서 식물보호와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위한 식물 위생 원칙. 로마, IPPC 사무국, FAO

2015-03 CPM-10은 “식물위생 상태”와 관련된 소소한 수정을 인지

2015-06 IPPC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하고 CPM-10(2015)에서 결정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변경(reformatted)함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15-12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배경

원칙

1. 기본 원칙
 - 1.1 주권(sovereignty)
 - 1.2 필수성
 - 1.3 관리된 위험
 - 1.4 최소 영향
 - 1.5 투명성
 - 1.6 조화
 - 1.7 비차별
 - 1.8 기술적 정당성
 - 1.9 협력
 - 1.10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 1.11 수정

2. 운영 원칙

- 2.1 병해충위험분석
- 2.2 병해충 목록화
- 2.3 병해충무발생 지역과 병해충저발생 지역 인정
- 2.4 규제병해충의 공적 방제
- 2.5 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
- 2.6 예찰
- 2.7 병해충 보고
- 2.8 식물위생증명

- 2.9 화물의 식물위생 보전성(integrity)과 안전성(security)
- 2.10 즉각적인 행동
- 2.11 긴급조치
- 2.12 NPPO의 규정(provision)
- 2.13 분쟁 해결
- 2.14 부당한 지연 방지
- 2.15 위반사항 통보
- 2.16 정보 교환
- 2.17 기술 지원

채택

이 기준은 1993년 11월 제27차 FAO 총회에서 “국제 교역과 관련된 식물 검역 원칙”으로 처음 승인되었다. 1차 개정은 2006년 4월 제1차 식물위생 조치위원회(Commission on the Phytosanitary Measures)에서 현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본 기준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구현되고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 기준(ISPMs)에서 상술되어 있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식물위생 원칙을 설명한다. IPPC 목적에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배와 비재배/관리되지 않은 식물, 야생 식물상, 수생 식물을 포함하는 식물의 보호와, 사람, 품목, 이동수단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련된 원칙을 다루고 있다. 본 기준은 IPPC를 변경하거나 현존하는 의무를 확대하거나 다른 어떤 협정 또는 법 규정을 해석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털(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WTO. 199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식물위생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본 기준은 IPPC 하의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주권, 필수성, 관리된 위험, 최소 영향, 투명성, 조화, 비차별, 기술적 정당성, 협력, 식물 위생조치의 동등성, 수정. 또한, 본 기준은 IPPC 하의 운영 원칙들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식물위생조치의 설정,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공적인 식물위생 시스템의 행정과 관련된다.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병해충위험분석, 병해충 목록화, 병해충무발생 지역과 병해충저발생 지역 인정, 규제병해충에 대한 공적 방제, 시스템적 접근, 예찰, 병해충 보고, 식물위생증명, 화물의

식물위생 보전성(integrity) 및 안전성(security), 신속한 행동, 긴급조치, NPPO의 규정, 분쟁 해결, 부당한 지연 방지, 위반사항 통보, 정보교환, 기술 지원.

배경

최초의 ISPM 1(국제 무역과 관련된 식물검역의 원칙들)은 1993년 제27차 FAO 총회에서 하나의 참고기준(reference standard)으로서 승인되었다. 본 기준은 당시 WTO/SPS 협정이 협상 중인 시점에 개발되었다. 이는 논의 중에 있던 SPS 협정의 일부 요소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1994년 4월에 SPS 협정이 채택되었고 그 이후 식물위생조치 관련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1997년 FAO 총회에 의해 IPPC가 채택되었다. 이는 1979년 판에 많은 변화를 포함한다. 1997년 IPPC의 개정은 ISPM 1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PS 협정에 더하여서 식물의 보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다른 국제 협약들이 존재한다.

본 기준은 IPPC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물위생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아래 설명된 원칙은 IPPC의 핵심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이 제공된다. 본 기준은 IPPC 전체 조문에 일치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IPPC로부터 인용된 부분은 인용표시 또는 들여쓰기로 나타내었다.

원칙

이들 원칙은 IPPC 계약국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IPPC 전체 조문에 일치되게 총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기본원칙

1.1 주권

계약국들은 자국 영토 내의 식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과 일치하도록 식물위생조치들을 제정하고 채택하고 식물건강에 대한 적정 보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

식물위생조치 관련 IPPC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규제병해충의 자국 영토 내 유입 및/또는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계약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에 따라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반입을 규제할 주권적 권한을 가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a) 예를 들면, 검사, 수입 금지 및 소독처리를 포함한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식물위생조치를 제정하고 채택
- (b) 상기 (a)에 따라 제정 또는 채택된 식물위생조치에 일치하지 않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 또는 화물에 대하여 계약당사국의 영토로의 반입 거부, 유치, 소독처리, 폐기 또는 제거 요구
- (c) 규제병해충의 자국 영토 내로 이동 금지 또는 제한
- (d)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생물방제제와 식물위생과 관련된 다른 생물체에 대한 자국 영토로의 이동 금지 또는 제한 (Article VII.1)

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그리고 “국제 무역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Article VII.2), 각 계약국은 IPPC Article VII.2 조항에 일치하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필수성

계약국들은 검역병해충의 유입 그리고/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규제 비검역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식물위생 조치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계약국들은 식물위생적 고려에 의해 필수적이지 않는 한, 자국의 식물위생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Article VII.2(a))고 규정하였다. Article VI.1(b)는 “계약국들은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식물 건강을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Article VI.2는 “계약국들은 비규제병해충에 대해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1.3 관리된 위험

체약국들은 식물과 식물성 산물 그리고 다른 규제물품을 수입할 때, 항상 병해충의 확산과 유입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리된 위험의 정책을 바탕으로 식물위생조치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체약국들은 “... 관련 병해충 위험에 상응하는 ... 식물위생조치만을 취해야 한다”(Article VII.2(g)).

1.4 최소 영향

체약국들은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로서 사람, 품목 및 수송 수단의 국제적 이동에 최소의 장애가 되는 ... 식물위생 조치만을 취해야 한다”(Article VII.2g).

1.5 투명성

체약국들은 IPPC에 정해진 바와 같이 다른 체약국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

- “체약국들은 식물위생 요건, 제한 및 금지가 채택되는 즉시, 그러한 조치들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믿어지는 체약국(들)에 공표하고 전달해야 한다”(Article VII.2(b))
- “체약국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위생 요건, 제한 및 금지에 대한 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rticle VII.2(c))
- “체약국들은 ... 식물 병해충에 대한 정보 교환에 협력해야 한다”(Article VIII.1 & 1(a))
- “체약국들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규제병해충 목록을 작성 및 보완하고, ... 그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Article VII.2(i))
- “체약국들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병해충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Article VII.2(j)).

1.6 조화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조화된 기준을 개발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들은 국제기준 개발에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Article X.1). 체약국들은 “... 적절할 경우, 동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국제기준들을

고려 ...” 하여야 한다(Article X.4). “체약국들은 동 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FAO 회원국 및 산하기구(member organization)가 동 협약의 규정과 이에 의거하여 채택된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식물위생조치들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Article XVIII).

1.7 비차별

만약, 체약국들이 관련 병해충 상태가 같고, 동일한 또는 동등한 식물위생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체약국들은 IPPC와 일치하게 체약국들간 차별이 없는 식물위생조치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들은 국내와 국제 식물위생 상황이 유사할 경우 차별 없이 식물 위생조치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식물위생조치는 “특히, 국제 교역에 있어서 임의의 또는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
- 체약국들은 “동일한 병해충이 수입하는 체약국의 영토 내에 존재한다면, 이 병해충에 적용되는 조치들보다 더 엄격하지 않은”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Article VI.1a).

1.8 기술적 정당성

체약국들은 “적절한 병해충위험분석이나,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또 다른 유사한 조사 및 평가를 사용하여 도달한 결론에 근거하여”(Article II.1) 식물위생조치들을 기술적으로 정당화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조치가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한, 자국의 식물위생 법령 하에서 Article VII의 제1항에 명기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Article II.2(a))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rticle VI.1(b)에도 기술적 정당성을 언급한다. ISPMs에 부합하는 식물위생조치들은 기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1.9 협력

체약국들은 IPPC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체약국들은

“동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서로 협력하여야”(Article VIII) 한다...” 또한, 체약국들은 IPPC 하에서 설립된 기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10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수입하는 체약국들은 수출하는 체약국들에 의해 제시된 대체 식물위생조치가 수입하는 체약국에 의해 결정된 적정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해당 ISPM : ISPM 24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결정과 인정을 위한 지침)

1.11 수정

식물위생조치의 수정은 새로운 또는 갱신된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관련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체약국들은 임의적으로 식물위생조치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약국들은 상황이 변경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이용 가능해지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식물위생조치들이 신속하게 수정 또는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Article VII.2(h)).

2. 운영 원칙

운영 상의 IPPC 원칙은 식물위생조치의 설정,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공식적인 식물위생 시스템의 관리와 관련된다.

2.1 병해충위험분석

NPPOs는 병해충위험분석을 수행할 때, 관련 ISPMs에 따라 생물적 또는 다른 과학적, 경제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할 때, 식물에 대해 영향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도 고려하여야 한다.

IPPC 해당조항 : 전문, Article II, IV.2(f), VII.2(g).

해당 ISPMs : ISPM 2(병해충위험분석 개요), ISPM 5(보충서 No. 2 포함(“잠재적 경제적 중요성”의 이해와 환경적 고려에 대한, 참고를

포함한 관련 용어에 관한 지침), ISPM 11(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분석), ISPM 21(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2.2 병해충 목록화

체약국은 “자신의 능력껏 최대한 규제병해충의 목록을 작성 및 갱신하여야 한다...”(Article VII.2(i)).

IPPC 해당 조항 : VII.2(i)

해당 ISPMs : ISPM 19 (규제병해충 목록에 관한 지침)

2.3 병해충무발생 지역과 병해충저발생 지역 인정

체약국들은 자국 영토로 반입되는 화물과 관련한 식물위생조치가, 수출국 NPPO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어떤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저발생하거나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일 수 있다.

IPPC 해당 조항 : II.

해당 ISPMs : ISPM 4 (병해충무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ISPM 8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황 결정), ISPM 10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요건), ISPM 22 (병해충저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2.4 규제병해충의 공적 방제

어떤 국가에 존재하는 병해충이 검역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규제되는 경우, 해당 체약국은 그 병해충이 공적으로 방제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ISPM : ISPM 5(보충서 1 포함(“공적 방제”와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침)).

2.5 시스템적 접근

일종의 규정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병해충위험 관리를 위한 종합적 조치는 수입하는 체약국의 적절한 식물위생 보호 수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일

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ISPM : ISPM 14 (병해충위험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에서 종합적 관리방안의 사용)

2.6 예찰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증명과 식물위생조치의 기술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과 부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들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병해충 예찰을 수행하고, 병해충의 분류(categorization) 및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해충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개발 및 유지하여야 한다”(Article VII.2(j)).

IPPC 해당 조항 : IV.2(b), IV.2(e), VII.2(j)
해당 ISPMs : ISPM 6(예찰 지침), ISPM 8.

2.7 병해충 보고

체약국들은 다른 체약국들에 대해 “즉각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병해충의 존재(occurrence), 발생(outbreak) 또는 확산을 보고하는 것에 ... 최대한 실행 가능할 정도까지 협력하여야만 한다”(Article VIII.1(a)). 이점에 대해서, 체약국은 ISPM 17(병해충 보고)과 다른 관련 절차에 설정된 절차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IPPC 해당 조항 : VIII.1(a).
해당 ISPM : ISPM 17.

2.8 식물위생증명

체약국들은 수출증명 시스템 운영과 식물위생증명서에 포함된 정보와 부기사항의 정확성의 보장을 성실하도록 실행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식물위생증명에 대한 준비(arrangements)를 하여야 한다(Article V)....”

IPPC 해당 조항 : IV.2(a)와 V.
해당 ISPM : ISPM 7(식물위생증명 시스템)과 ISPM 12 (식물위생

증명서들).

2.9 화물의 식물위생 보전성과 안전성

증명 이후 화물의 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약국들은 자국의 NPPO를 통해서 “화물의 구성, 대체 및 재감염에 대하여, 증명이 끝난 화물의 식물위생 안전성이 수출 전까지 유지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보장”하여야만 한다 (Article IV.2(g)).

IPPC 해당 조항 : IV.2(g)와 V.
해당 ISPM : ISPM 7과 ISPM 12.

2.10 즉각적인 행동

체약국들은 수입 시 요구되는 검사 또는 기타 식물위생 절차가 규제물품의 “...부패(perishability)와 관련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수행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rticle VII.2(e)).

IPPC 해당 조항 : VII.2(e).

2.11 긴급조치

체약국들은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위험이 생겼을 때, 긴급조치를 포함한 긴급활동을 채택 그리고/또는 실행할 수도 있다¹. 긴급조치는 그 적용에 있어 일시적이어야 한다. 그 조치의 지속이 기술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다른 유사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IPPC 해당 조항 : VII.6.
해당 ISPM : ISPM 13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지침).

2.12 NPPO의 규정(provision)

“각 체약국은 능력껏 최선을 다해, [Article IV.1]에 제시된 주요 책임을 담당할

¹ IPPC의 VII.6의 긴급활동 용어는 ISPM 5에서 정의되어 있듯이 긴급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적인 NPPO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만 한다”(Article IV.1).

IPPC 해당 조항 : IV.

2.13 분쟁 해결

체약국들은 다른 체약국들에 의해 요청받았을 때,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 IPPC 또는 ISPMs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어떤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서 취한 조치가 IPPC 의무사항 또는 ISPMs에서 제공된 지침에 상충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경우, “체약국들은 분쟁의 해결 관점에서 가능한 신속히 상호 논의(consult)하여야만 한다”(Article XIII.1). 만일 이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면, 분쟁 해결에 관한 Article XIII. 규정이나 다른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다².

IPPC 해당 조항 : XIII.

2.14 부당한 지연 방지

어떤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게 식물위생조치를 설정, 변경 또는 삭제할 것을 요청할 때, 그리고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요청은 부당한 지연 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병해충 위험분석, 병해충무발생 지역의 인정 또는 동등성의 인정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관련 절차가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PPC 해당 조항 : VII.2(h).

해당 ISPM : ISPM 24.

2.15 위반사항 통보

수입하는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증명의 주요한 위반사항 사례들에.... 대하여 관련 수출 체약국에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야만 한다”(Article VII.2(f)).

IPPC 해당 조항 : VII.2(f).

해당 ISPM : ISPM 13.

2.16 정보 교환

체약국들은 IPPC에 규정된 다음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공식적 연락처 (Article VIII.2)
- NPPO에 대한 설명과 식물보호 조직 배치 (Article IV.4)
- 식물위생 요건, 제한, 금지 (Article VII.2(b))(지정된 반입항 포함 (Article VII.2(d))과 이에 대한 이유(rationale) (Article VII.2(c))
- 규제병해충 목록 (Article VII.2(i))
- 병해충 존재, 발생, 확산을 포함하는 병해충 보고 (Article IV.2(b)와 VIII.1(a))
- 비상활동 (Article VII.6)과 위반사항 (Article VII.2(f))
- 병해충 상태 (Article VII.2(j))
- PRA에 필수적인 기술적, 생물적 정보 (실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Article VIII.1(c))

2.17 기술 지원

체약국들은 “동 협약의 이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 체약국들 특히, 개발도상국 체약국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Article XX).

IPPC 해당 조항 : XX.

² 체약국들에 의해 사용되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 해결 절차가 IPPC에 의해 개발되어 있다.